# 안산시 공고 제2025-452호

# 『2026년 안산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안산시 컨소시엄 참여기업 모집 공고

한국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실시하는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공모 참여를 위한 컨소시엄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2025년 2월 25일

안 산 시 장

### 1. 사업개요

□ 목   적 :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공동참
기업 선정 (컨소시엄 구성)
□ 사 업 명 : 2026년 안산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26. 12. 31.
□ 사업대상 : 안산시 관내
□ 사업비 규모 : <b>20억원 내</b>
□ 사업내용 : 주택, 공공·사업(산업)건물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 붙임7 "지원대상 융복합 모델" 참조
□ 기타사항 : 한국에너지공단 『2025년 신재생에너지보급(융복합지원)사
수요조사 곳고』(산업통상자워부 곳고 제2024-246호) 내용에 따

### 2. 신청자격

(	게너지원	분야별 면허 종류
C4	태양열, 수열에너지	· 「건설산업기본법」제 8조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난방시공업 (1종 또는 2종)을 등록한 기업
열 분야 -	지 열	· 아래 ①, ②의 면허를 모두 등록한 기업 ①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난방시공업(1종 또는 2종)을 등록한 천공 공사 면허 등록 업체 ②「건설산업기본법」제8조에 따른 보링·그라우팅 공사업 또는「지하수법」 제22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을 등록한 기업
전기 분야 (태양광, 소형풍력, 소수력 등)		·「전기공사업법」제4조에 의거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기업
열.전기 복합분야 (연료전지)		· 아래 ①, ②의 면허를 모두 등록한 기업 ① 전기공사업을 등록(필수)한 기업 ② 기계설비공사업, 난방시공업(1종 또는 2종), 가스시설시공업(1종 또는 2종) 중 1개 이상의 공사업을 추가로 등록한 기업
	기물설비/ 팰렛/바이오	·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공해방지시설업을 등록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등록한 기업
모니터링		· 한국에너지공단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계가 가능한 모니터링 업체로 공단 인증을 받은 RTU 제조업체여야 함
Ę	설계·감리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거 설계업, 감리업을 등록한 기업 (태양광, 지열,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계설비 감리가 가능하여야 함)

- □ 2025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선정 참여기업을 우선 자격대상으로 함
  - ※ 단, 공고 접수 마감일까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2025년 참여기업 선정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2024년 참여기업을 기준으로 하고, 최종 결과 발표 후 2025년 참여기 업으로 선정되지 않은 기업은 컨소시엄에서 배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등의 제한을 받지 않는 기업

### 3. 신청방법 및 일정

□ 추진일정

구 분	기 간	비고
사업계획서 접수	2025. 3. 7.한	참여기업 ⇒ 안산시
참여기업 선정	2025. 3. 10.한	안산시 ⇒ 참여기업
사업계획서 협의, 보완	2025. 6. 30.한	안산시 ⇔ 참여기업
사업신청(예정)	2025. 6. 30.한	안산시 ⇒ 한국에너지공단

- ※ 추진일정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신청기간 : 2025. 2. 25.(화) ~ 2024. 3. 7.(금) 18:00까지

□ 접 수 처 : (우15358)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39 환경녹지국 2층 안산시청 에너지정책과 신재생에너지팀, 031-481-2238
□ 접수방법 : 방문, 우편접수【FAX 접수 불가】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컨소시엄 참여기업 신청서, 서약서, 확인서, 사업계획서(2부),
사업계획서(USB), 평가 항목 증빙자료
□ 선정통보 : 2025. 3. 11.(화), 안산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
4. 평가기준 및 방법
□ 선정방법 : 평가 최고점수를 득한 1개 컨소시엄 선정
※ 단, 최고점수를 득한 컨소시엄에 결격사유 발생 시 차순위 컨소시엄 선정
□ 평가기준 : 붙임6 "컨소시엄 참여기업 평가지표"에 의거 평가
□ 동점자 발생 시 선정 방법
<ul><li>(2022년 ~ 2024년 융복합 지원사업 참여실적) &gt; (안산시 시공실적) &gt;</li></ul>
(에너지원의 다양성) 순으로 높은 참여기업을 우선 순위자로 선정
□ 컨소시엄 구성 후, 사업대상 지역과 범위 등을 기획·선정·보완하여
한국에너지공단 공모 참여
5. 유의사항
□ <u>행정여건 및 예산여건에 따라 융·복합사업 추진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u>
□ 본 컨소시엄은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것으로
미 선정 시 컨소시엄은 자동 파기되고 재정적 지원이 불가함
□ 본 사업에 사용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등록된
인증제품 우선 사용 원칙
□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미제출 및 지연으로 인한 책임은
공모 참여업체에게 있음
□ 기술인력, 사업실적 등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
하는 경우 컨소시엄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취소할 수 있음
□ 컨소시엄으로 선정된 기업은 설치 후 가동되는 설비에 대하여 사후관리

- (5년)와 하자보증(하자이행 보증기간, 5년)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 민간이 부담하는 비용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비 외는 없어야 함 (단, 주민수익창출형 모델 제외)
-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원별 시공기준" 및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을 준수하여야 함
- ※ 기타 세부사항은 안산시 에너지정책과 신재생에너지팀[031-481-2238]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융복합지원사업 컨소시엄 참여기업 신청서(서식) 1부.
  - 2. 서약서(서식) 1부.
  - 3. 확인서(서식) 1부.
  - 4.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사업계획서(서식) 1부. \*\*2부 제출
  - 5. 시공능력 및 기업신용도 증빙자료(서식) 1부.
  - 6. 컨소시엄 참여기업 평가지표 1부.
  - 7. 지원대상 융복합 모델 1부. 끝.

#### 〈붙임 제1호 서식〉

4	융복합지원사업 컨소시엄 참여기업 신청서						
참여기업	회사명	(인)	대 표				
(태양광, 태양열,	주 소						
지열 등)	전 화		휴대전화				
※ 주관기업	팩 스		이메일				
카사 카이	회사명	(인)	대 표				
참여기업	주 소						
(태양광, 태양열,	전 화		휴대전화				
지열 등)	팩 스		이메일				
참여기업	회사명	(인)	대 표				
(태양광, 태양열,	주 소						
	전 화		휴대전화				
지열 등)	팩 스		이메일				
	회사명	(인)	대 표				
참여기업	주 소						
(모니터링)	전 화		휴대전화				
	팩 스		이메일				
	회사명	(인)	대 표				
참여기업	주 소						
(감리)	전 화		휴대전화				
	팩 스		이메일				

상기회사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추진과 관련 컨소시엄 참여기업으로 선정되고자 신청하며 선정기관의 신용정보 조회와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1.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2.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 식별 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3. 사업신청과 관련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 붙임 1. 사업자등록증 1부.
  - 2. 사용인감계 1부.

안 산 시 장 귀하

# 서 약 서

업체명:

주 소: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수행 참여업체(컨소시엄) 모집 신청서 제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와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2. 안산시가 결정한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추후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 3. 안산시 행정여건 및 예산여건에 따라 융복합지원사업 추진이 변경되거나 취소되어도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안 산 시 장 귀하

〈붙임 제3호 서식〉

# 확 인 서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컨소시엄 참여기업 신청서 제출과 관련하여 본 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계약체결 후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 2025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대 표 자 : (인)

안 산 시 장 귀하

# 〈붙임 제4호 서식〉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참여기관								
		소 4	ì				전 화		
	작성자	성명	3				H.P		
		FAX					E-mail		
1.	사 업 명	6	2026	년 안산	·시 신재	생에	너지 융복	·합지	원사업
2.									
3.	지원대상모델	모델번			모	델명			
		참여분	야						
		업체명	형				대표		
		<b>-</b>					담당자		
		주소					연락처	사 HP	무실: :
		참여분	야				'		
	참여기관 (컨소시엄)	업체명	拮				대표		
							담당자		
4.		주소					연락처	사- HP	무실: :
		참여분	야						
	(62 16)	업체 및					대표		
							담당자		
		주소					연락처	사- HP	무실: ·
		참여분	oŀ.					111	•
		업체명					대표	1	
		H/II (	5				담당자		
		주소						사기	 무식·
		•					연락처	HP	무실: :
			구분		호수(プ	1] 人)	용량(k	(V/)	설치대상
			1 正		보구(/	Π (ΔΞ)	7) % &	W)	(주택, 공공)
		.1 .1							
		신·재							
_	에 H 기신	생							
Э.	세부사업	설비							
		E 1							
		보조							
		설비							
		합	. ;	 계					
				*			1		I .

# 6. 사업비 신청내역

# 가. 재원조달 계획

(단위:천원)

3	구 분	정부	지지체/공공 기관	민간	총사업비
신·재					
생					
설비					
보조					
설비					
섵	길 계 비				
모	니터링비				
ŏ	나 계				

# 나. 사업비 산출내역서

(단위:천원)

	구 분	산출 근거	총사업비
신·재			
생			
설비			
보조			
설비			
설	l 계 비		
모1	니터링비		
힙	- 계		

#### 7. 사업내용

#### 가. 추진방법

- 사업목표와 이해도
- 사업추진절차, 단계별 사업기간과 사업일정표
- 컨소시엄 참여기관의 역할과 참여율
- 참여기업 현황(주요 사업현황, 기업특성 등)

#### 나. 인프라 적정성

- 사업 필요성 및 컨소시엄 특성 등
- 민원 및 관련법규 저촉 여부, 처리방안(전력 상계처리 가능여부 및 각종 인·허가 관련기관(한전, 가스공사 등)과 주민 등 이해 관계자와의 사전협의 내용 포함)
- 사업대상지의 밀집도 등

### 다. 사업추진 구체성

- 에너지원 및 용량구성의 다양성
- 사업의 공사 관리 운영계획 (직접시공계획 등 - 단 지열은 천공에 한하여 하도급 인정)
-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운영계획

### 라. 사후관리 및 융복합 기대효과

- 향후 점검계획, 점검 방법과 점검주기 등
- A/S발생 시 처리방법 및 하자보증기간(5년)
-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따른 에너지이용 편익과 환경개선 효과 등 (에너지생산량, 연간전력사용량 대비 효과 등)

#### 〈붙임 제5호 서식〉

### 시공능력 및 기업신용도 증빙자료

#### ※ 작성시 주의사항

- <u>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2023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참여</u> 기업' 선정기업은 서류제출 불필요. 비 선정기업만 서류제출
- 사업공고문의 붙임6 "컨소시엄 참여기업 평가지표"를 반드시 정독 후 정확히 작성 할 것
- 1개의 참여기관이 2개 이상의 에너지원을 설치하는 경우, **에너지원별로 증빙자료를** 분리하여 **각각 작성**할 것
- 시공실적 증빙서류 중 보급사업(주택지원/건물지원/융복합지원/지역지원/설치의무화) 증빙은 설치내용란에 신청자(소유자)명, 증빙서류에 설치확인 신청번호를 기입할 것
- 상기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증빙자료 식별 불가시, 0점 처리

#### □ 주관기관명 : *예시) 안산시청*

참여기관명	설치담당 에너지원	'23년 보급사업 참여기업 선정 유무(O/X) (단, 설치예정인 에너지원에 대한 선정 유무임)
<u>예시) ***태양광(주)</u>	태양광	Ο
<u>예시) ***태양열(주)</u>	태양열	X

#### 1. 기술인력 보유현황

가. 총괄표 (근무경력 합계: 산업기사이상 \_\_명, \_\_월, 기능사 \_\_명, \_\_월)

자격증	번호	성명	자격종목	자격증번호	근무경력(개월)
	1				
	2				
사어키ル	3				
산업기사 이상	4				
이상	5				
	6				
	7				
	8				
기 느 기	9				
기능사	10				
	11				
			합기	4	

- 나. 증빙서류 (총괄표에 기재된 성명 순서대로 작성)
  -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 사본을 페이지당 1장씩 첨부(화질 주의, 확인불가 시 0점 처리)
  - 경력증명 사본은 4대보험 중 1개 가입서류, 경력증명서 인정 불가(0점 처리)

#### 2. 신규고용인력

가. 총괄표 (근무경력 합계 : 산업기사이상 \_\_명, \_\_월, 기능사 \_\_명, \_\_월)

자격증	번호	성명	자격종목	자격증번호	근무경력(개월)	청년고용
산업기사	1					О
이상	2					X
ા વજ			합계			
	3					
기능사	4					
			합계			

- 나. 증빙서류 (총괄표에 기재된 성명 순서대로 작성)
  -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 사본을 페이지당 1장씩 첨부(화질 주의, 확인불가 시 0점 처리)
  - 경력증명 사본은 4대보험 중 1개 가입서류, 경력증명서 인정 불가(0점 처리)

#### 3. 시공실적

#### 가. 총괄표

번호	설치내용	설치완료일	설치용량	설치개소
1	예시)2023 행복시 융복합사업	2019.12.10.	90kW	30
2	예시)2023 대한시 지역지원사업	2019.11.30.	50kW	2
3				
4				
5				
6				
7				
8				
9				
합계			140	32

# 나. 증빙서류 (총괄표에 기재된 순서대로 작성)

번호	설치내용	증빙서류(이미지파일) - 화질주의
1		
2		

3.	기	업신용도
	가.	신용도 등급 :
	나.	증빙서류(이미지파일)

# 컨소시엄 참여기업 평가지표

### □ 배점비율 및 평가항목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한국에너지공단 급사업 참여기업		25	'24년 참여기업의 경우 만점(25) 부여
		기술	보유현황	4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근무경력
시공능력	,,,,,,,	인력	근무경력	4	기술인틱 모뉴언왕 꽃 근구성틱 
(25)	'24년 비찬언	신규	고용인력	4	신규 고용인력 및 청년 고용 실적
	비참여 기업	시공	설치용량	5	최근 3년간 신재생에너지 시공실적
	118	실적	설치개소	5	되는 3년년 전세층에다시 사용할다
		1	신용도	3	신재생 설비 시공기업 경영상태
모니터링 능력 (10)	REMS 연동률(%)		10	모니터링업체의 통합모니터링(REMS) 연동률(%)	
지역경제 활성화 (15)	경기도 기업 참여도		15	법인사항 증명서의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인 경우(2025.1.1.~공고 전일 기준)	
관내업체 활성화 (5)	안산시 기업 참여도		5	법인사항 증명서의 본점 소재지가 안산시인 경우(2025.1.1.~공고 전일 기준)	
사후관리능력 (10)	A/S전문성		10	한국에너지공단 선정 A/S전담업체 비율 (2024년 선정기준)	
수행실적 (10)	안신	시 시공	공 실적	10	최근3년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관내 시공실적
융복합 선정횟수 (15)	돌악사업 선정외수		15	최근 3년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선정 횟수	
BIPV 시공실적 (10)	RIPV 가설사양		10	최근 3년간 신재생에너지 BIPV 실적 횟수	
합계				100	

<sup>※</sup> 시공능력은 참여기업별 합산점수의 평균값 적용

### □ 동점 발생 시 선정 방법

○ (2022년 ~ 2024년 융복합 지원사업 참여실적) > (안산시 시공실적) > (에너지원의 다양성) 순으로 높은 참여기업을 우선 순위자로 선정

# <평가관련 항목별 배점 및 세부기준>

# □ 시공능력(25점)

### ① '24년 공단 참여기업(25점)

- 2024년 참여 에너지원이 모두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경우(25점)
  - ※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 임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시만 인정함(단, 모니터링 업체는 참여기업 실적에 불포함)
- 분야별 공단 참여기업 협약서 제출 (단 모니터링은 REMS 공단 인증을 받은 RTU 제조업체여야 함 ※ REMS 사이트(rems.energy.or.kr) 공지사항 참조)
- 24년 비참여기업이 일부 포함된 경우 비참여기업의 시공능력 배점점수를 적용하여 참여기업과 평균점수를 적용
  - ※ 같은 에너지원에 2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한 경우 에너지원별 평균점수를 적용
  - 예시) 태양광 A, 태양광 B, 태양열 C, 지열 D 모두 참여기업으로 구성된 경우 25점 만점

태양광 A, 태양열 C 기업은 참여기업이고, 태양열 B, 지열 D 기업이 비참여기업으로 시공능력 평가결과가 각각 23, 21일 경우

A,C: 25점, B: 23점, D: 20점 = [(25+23)/2+25+20]÷3 = 23점

### ② '24년 공단 비참여기업(25점)

# 가. 기술인력 배점기준(4점)

-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국가기술자격증(또는 경력수첩) 사본 1부, 고용일자 확인용 증빙자료 사본 1부를 인원별로 제출
  - \* 고용일자 확인용 증빙자료 :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중 1개 보험 가입서류
- 기술인력 배점은 설비 시공기업의 기술인력 보유현황과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 력의 근무경력을 합계하여 산정
- 기술인력 보유현황은 기업 내 컨소시엄 참여신청 에너지원의 인력만 인정
-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에 한하여 인정

### - 기술인력 보유 현황 (4점)

٦н	구분 국가 기술자격 보유인력		배 점	
十군	국가 기술자격 모유인덕 	태양광	태양열	기 타
	가. 산업기사 이상			
	① 7인 이상	4	4	4
	② 6인	3.4	3.6	4
	③ 5인	2.6	3.4	3.6
	④ 4인	2	3.0	3.4
	⑤ 3인	1.4	2.0	3.0
4점	⑥ 2인	1.0	1.4	2.0
4점 한도	나. 기능사			
	① 7인 이상	2.4	2.4	2.4
	② 6인	2.0	2.0	2.0
	③ 5인	1.6	2.0	2.0
	④ 4인	1.4	1.6	2.0
	⑤ 3인	1.0	1.4	1.6
	⑥ 2인	0.6	1.0	1.4

\* 산업기사 이상 및 기능사 배점의 합계는 최대 4점을 초과할 수 없음.

# - 기술인력 근무경력 (4점)

구분	태양광	기 타	배 점
	가. 산업기사 이상의 근무경력 개월수의 합	가. 산업기사 이상의 근무경력 개월수의 합	
	① 800개월 이상	① 700개월 이상	4
	② 600개월 이상~800개월 미만	② 500개월 이상~ 700개월 미만	3.4
	③ 400개월 이상~600개월 미만	③ 300개월 이상~500개월 미만	2.6
4.71	④ 200개월 이상~400개월 미만	④ 100개월 이상 <sup>~</sup> 300개월 미만	2.0
4점 한도	④ 200개월 미만	④ 100개월 미만	1.4
	나. 기능사의 근무경력 개월수의 합	나. 기능사의 근무경력 개월수의 합	
	① 700개월 이상	① 600개월 이상	1.6
	② 500개월 이상~700개월 미만	② 400개월 이상~600개월 미만	1.4
	③ 200개월 이상~500개월 미만	③ 200개월 이상~400개월 미만	1.0
	④ 200개월 미만	③ 200개월 미만	0.6

\* 산업기사 이상 및 기능사 근무경력 배점의 합계는 최대 4점을 초과할 수 없음.

# 나. 신규 고용인력(4점)

- ㅇ 신규 고용인력에 대해 기술인력 당 1점, 청년 고용\*일 경우 1점(중복 인정 불가)
  - 신규 고용인력(산업기사, 기능사 무관) 배점의 합계는 최대 4점을 초과할 수 없음
    - \* 본 공고일 기준 만 34세 이하, '24년 이후 신규 채용 및 공고일 이전 고용인원에 한하여 인정(4대 보험, 자격증 등 기술인력 제출 자료 확인)

### 다. 시공실적 배점기준(10점)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시공실적증명서나 시공실적확인서를 제출
  - \* 설치 내역은 소유자, 주소, 확인서 발급일, 관리번호, 설치일, 설치용량 등을 포함한 설치 리스트를 별도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실적은 발주자 또는 신재생에너지협회에서 발급한 것에 한하여 인정 (센터 사업의 경우 설치 리스트로 설치확인서 제출 가능)
- 시공실적 배점은 참여제안을 하는 시공기업의 설치용량과 설치개소 실적을 합계 하여 산정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66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사업, 발전차액지원사업, 공공기관 자체사업, 민간자체사업을 인정
-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실적증명서에 공동도급비율을 표시하여야 하며, 해당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 설치용량(5점)

태양광(kW)	태양열(m²)	지열(kW)	수열(kW)	기타(kW, m²)	배 점
3,000이상	6,000이상	6,000이상	2,000이상	100이상	5점
2,000~3,000미만	4,000~6,000미만	4,000~6,000미만	1,500~2,000미만	50~100미만	4점
1,000~2,000미만	2,000~4,000미만	2,000~4,000미만	1,000~1,500미만	20~50미만	3점
500~1,000미만	1,000~2,000미만	1,000~2,000미만	500~1,000미만	10~20미만	2점
500미만	1,000미만	1,000미만	100~500미만	10미만	1점

### ○ 설치개소(5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수열	기 타	배 점
300이상	200이상	50이상	4이상	100이상	5점
100~300미만	100~200미만	30~50미만	3	50~100미만	4점
50~100미만	50~100미만	10~30미만	2	20~50미만	3점
50미만	50미만	10미만	1	20미만	2점

### 라. 기업신용도 배점기준(3점)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
-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서에 기재된 등 급
  -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본 공고 마감일 이후인 것에 한함
  -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발급가능 신용정보업자 : NICE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나이스디앤비, 한국기업데이터, ㈜이크레더블, 코리아크레딧뷰로

구 분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등급 기준	배 점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3점
2전 치트	기업신용평가등급 BBB+, BBBO, BBB-, BB+, BBO, BB-	2점
3점 한도	기업신용평가등급 B+, BO, B-	1점
	기업신용평가등급 CCC+ 이하, 미제출	0점

# □ 모니터링 능력(10점)

### ○ 모니터링업체의 신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시스템(REMS) 연동률

배점	6	9	12	15
REMS 연동률(%)	90.0% 미만	90.0% 이상 ~ 95.0% 미만	95.0% 이상 ~ 98.0% 미만	98.0% 이상

- \* 모니터링은 REMS 공단 인증을 받은 RTU 제조업체여야 함
- \* REMS 연동률(%)은 최소 50개소 이상 연동 모니터링업체에 대해 산정
- \* 연동률은 REMS 홈페이지(https://rems.energy.or.kr-게시판-연동률) 자료를 활용하며 '23.10월부터 '24.1월말까지 각 월말 기준 수치의 평균값 적용
- \* 신규업체는 기존 인증업체 중 최고점수 부여 ※ 신규업체 기준 : 접수마감일 기준 연동 개소수 50개소 미만 또는 인증 1년 이하 업체
- \* 평가를 위해 非보급사업 등을 REMS에 연결할 경우 향후 사업참여 제한

# □ 지역경제 활성화(15점)

### ○ 경기도 소재 기업 참여비율

구분	컨소시엄 內	컨소시엄 內	컨소시엄 內	컨소시엄 內
	경기도 소재	경기도 소재	경기도 소재	경기도 소재
	기업 비율0~39%	기업 비율40~69%	기업 비율70~99%	기업비율100%
15점 한도	2점	5점	10점	15점

- \* 2025.1.1. 기준으로 공고 전일까지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점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지사/대리점 인정불가)
- \* 증명서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 □ 안산시 (관내)업체 참여 여부 (5점)

항목	미포함	포함
5점한도	0점	5점

\* 예시) 안산시 관내 업체가 1개 이상일 경우 최대 5점

\* 대상 : 에너지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풍력 등)

\* 증빙자료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 □ 사후관리능력(10점)

○ 참여 업체가 A/S 전담기업인 경우

구 분	3개 업체 이상	2개 업체	1개 업체	1개 업체 미만
배 점	10점	7점	4점	0점

- \* A/S 전문성 : 한국에너지공단 선정 (경기도) A/S 전담업체 비율 (2024년 선정기준)
- \* 각 에너지원별로 1개씩만 인정하며 2023년 한국에너지공단 A/S 전담기업 확인서 제출 (설계·감리 업체 및 모니터링 업체는 제외)

#### □ 수행실적(10점)

구 분 (설치개소)	50개소 이상	35개소 이상	20개소 이상	20개소 미만
10점 한도	10점	7점	4점	1점

- \*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관내(안산시) 시공실적
- \* 한정된 업체로 인한 융복합 개소수는 제외함
- \* 증빙자료: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서(신재생에너지센터 발급)

###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선정 개소(15점)

구분	15회 이상	10회 이상	10회 미만
태양광	5점	3점	1점
태양열	5점	3점	1점
지열	5점	3점	1점

-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에너지원에 대해서만 평가
- ※ 최근 3년간(22년 ~ 24년) 융복합지원사업 업체별 선정 개소의 합계(단, 모니터링 선정실적 제외)

예시) 선정 개소는 기초지자체 시·군·구 단위를 의미

- ※ 컨소시엄 내 참여기업 총합으로 산정하며 동일 에너지원이 2개 기업일 경우 평균 적용 예시) 태양광A사 2개소, 태양광B사 8개소면 총 횟수는 [(2 + 8) / 2] = 5개소
- ※ 증명서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컨소시엄 선정결과

# □ BIPV 시공실적(10점)

구 분	7건 이상	5건 이상	3건 이상	3건 미만
배점	10점	5점	3점	1점

- ※ 최근 3년 (2022년 ~ 2024년)에 한함
- ※ 증빙서류: 설비설치확인서 또는 시공실적증명서 또는 사용전검사·점검필증
- ※ 태양광 업체만 평가

# 지원대상 융복합 모델

#### 1. 계통 연계가 가능한 지역의 에너지원(2종 이상) 융합

- 이 (내용) 주택단지(신규 포함) 등에 태양광·소형풍력·연료전지 등의 전기설비와 태양열·지열 등의 열설비를 함께 설치·지원
  - \*(예시) 2018 삼척시 광진마을, 죽동마을 에너지자립마을 : 55개소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을 설치하여 사용 중(화석에너지 사용 최소화)

#### 2. 계통 연계를 할 수 없는 지역의 에너지원(2종이상) 융합

- 이 (내용) 발전원가가 높은 특정 지역(도서·벽지 등)에 태양광, 풍력 등을 함께 설치· 지원하여 기존 디젤발전기 등을 대체
  - \*(특징) 독립형 Small Grid 형태로 수출상품 전략화를 위한 Track Record 구축과 대체 에너지원으로 운영비 절감이 가능
  - \*(예시) 2015년 충남 죽도 에너지자립섬 (완료), 2015년 인천 지도 에너지자립섬 (완료)

#### 3. 특정지역의 구역 복합(주택, 상업·공공건물 등)

- O (내용) 주택, 상업·공공건물 등이 혼재된 특정지역에 태양광·태양열·지열· 소형풍력·연료전지 등의 설비를 설치·지원
  - \*(예시) 2017 대구 테크노폴리스 에너지자립타운 : 산업단지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을 설치하여 구역내 에너지자립율 제고(화석에너지 사용 최소화)

# 4. 모니터링 고도화

- (내용) '13~17년 융복합지원으로 설치 완료한 사업과 관련하여, 서로 상이한 모니터링 방식을 공단의 REMS(신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시스템)와 동일한 방식으로 모니터링 고도화 추진
  - \* 융복합사업 외 타 보급사업. 지자체 자체사업 등은 모니터링 고도화 대상이 아님
  - \*(예시 1) 2016년 OO군 융복합지원사업 완료 ① 태양광, 태양열은 자가 모니터링 ② 지열은 일부 자가모니터링(전력사용량 비계측)
    - ☞ 2023년 OO군 융복합지원사업 모니터링 고도화사업
  - \*(예시 2) 2017년 OO군 융복합지원사업 완료 ① 태양광, 태양열 등 웹모니터링
    - ☞ 2023 OO군 융복합지원사업 모니터링 고도화사업

#### 5. 주민자치회 및 주민수익 창출형 모델

- O (내용) '지방분권법에 따른 행정안전부 선정 주민자치회'가 참여하여, 기피·혐오 시설 또는 유휴부지 등에 신재생에너지설비와 주민편익시설 등을 설치하고 환경개선과 주민수익을 동시에 구현
  - \*(특징) 상기의 융복합지원 모델과 연계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수익모델을 창출하고 문화·관광 및 주민편의시설 등을 유치
  - (주민수익 창출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비용 등은 국비 지원 없음, 전액 컨소시엄 부담)
  - \*(예시) 2023년 ㅇㅇ군 융복합지원사업 신청(농촌태양광 등과 연계한 주민수익창출 사업)

#### 6. 계간축열조를 활용한 에너지원 융합

- O (내용) 봄~가을에 남는 태양열을 계간 축열조에 저장하였다가 동절기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일정용량 집열면적 확보가 가능한 지역에 태양열, 지열 등의 열설비와 함께 설치·지원
  - \*(예시) 2015 ㅇㅇ시 친환경에너지타운 내 계간축열조 등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 7.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역의 에너지원(2종이상) 융합 및 구역 복합(주택, 상업·공공건물 등)

O (내용)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에 태양광·태양열·지열·소형풍력·연료전지 등의 설비를 설치·지원